

#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871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재난, 경기 침체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경제적·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및 복지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선별 발굴·집중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시점임.

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실현코자 기존 동주민센터의 복합 기능을 복지·건강분야 중심 사업으로 재편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, 유사 타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하는 조항 신설(부칙 제2조)

나. 기본원칙, 사업 범위 등 조례 각 조항에서 복지·건강 분야 외 마을공동체, 주민자치, 행정, 여성 분야 관련 문구 및 조항을 삭제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7조, 제8조, 제12조)

다. 사업 수행 시 수행 주체로 시 이외 자치구의 자율성과 책무를 강화하는 취지로 조항에 자치구 문구 삽입(안 제4조, 제11조)

라.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시 통·반장 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복지·건강 분야 사업 수행인력의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(안 제9조, 제11조, 제13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9조(사회보장 전달체계)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관련 규정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국·국 검토의견:  
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3. 4. 13. ~ 5. 3.) 결과: 붙임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허선미(☎2133-7380)

##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동행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동행센터"란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의 복지·건강 향상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를 말한다.
2. "지역의 사회보장"이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.
3. "주민"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거주·생활하는 구성원을 말한다.
4. "지역"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① 동행센터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부서 간에 협력하고 민과 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지향한다.

② 동행센터는 인권에 기반한 직무태도를 견지하며, 지역중심·수요자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.

③ 동행센터는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·물적 자원 확보 등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동행센터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 주민복지의 향상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필요한 인적·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
2.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
3. 시·구·동 간 또는 민·관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
4. 그 외 동행센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시장과 구청장은 동행센터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
2.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발굴 및 지원
3.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
4.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상시 이웃돌봄 안전망 구축

제5조(기본계획 등) ① 시장은 동행센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·지원하기 위하여 동행센터 운영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4년 단위로 수립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정책의 기본 방향
2. 운영 및 지원체계
3.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
4. 자원의 확보 및 배분

## 5.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동행센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행계획 제출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실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해당연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문회의) ① 시장은 동행센터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자문회의는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관련(복지, 건강)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·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.

③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의 범위) ① 동행센터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지역의 사회보장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
2.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돌봄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·보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돌봄SOS사업

3. 동행센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등을 실시하는 사업

② 동행센터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, 사회적 고립·빈곤·소외·위기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시 유관부서, 자치구 및 복지관련 기관, 민간단체, 지역주민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

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.

1. 밀접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지역주민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,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 활동

2.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를 활용한 유기적 민관협력 지원활동

③ 시장은 학대·폭력 등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구청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기가정통합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자치구 통합 사례관리사, 상담원,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 배치에 관하여 소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.

제9조(통장 및 반장 참여) 시장은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의 통장 및 반장(이하 “통반장”이라 한다)과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여 동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0조(역량강화) ① 시장은 동행센터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여 관련 공무원이 매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구청장이 동행센터 사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행센터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구청장이 동행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방문인력 안전확보) ① 동행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

2. 방문간호사

3. 통합사례관리사

4.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이 동행센터 업무 수행인력으로 인정하는 자

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의 방문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동행센터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등 지급
2. 방문인력에게 사고 발생 시 신체적·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
3.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의 지원사항은 시장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비용의 지원) ① 시장은 자치구 통반장과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동행센터 사업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경우,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자치구의 동행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13조(포상금 지급) 시장은 지역사회 주민 등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그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(제5조제2항 관련)

| 의견제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 출 의 견   | 조 치 내 용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<p>구로구<br/>오류제1동<br/>(한서정)</p> | <p>○ 제13조(포상금 지급) 조항 삭제 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발굴·협력 활동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이 목적이 되는 것은 부적절</li> <li>- 이미 각 동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위원을 두고 있고, 위원들은 지사협, 복지통장, 우리동네돌봄단 및 직능단체의 임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활동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이 다수임</li> <li>- 이웃발굴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, 주민센터와 지역주민이 순수하게 협력하는 관계에 부정적 영향 초래 우려</li> </ul> | <p>○ 미반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조항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 조항임</li> <li>- 동 조항은 임의규정으로, 포상금 지급 시행 여부, 신고대상, 지급 및 제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전 의견수렴 및 다각적 검토를 통해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화할 예정임</li> </ul> |



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의 내용은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안심돌봄복지과 허선미 (02-2133-7380)